

「보성군 공고 제2024-1619호」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 11. 8

보 성



**1. 사업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사업비** : 53,316천원(국비29,620 군비 23,696) ※ 자부담 10% 별도

**3. 신청기간** : 2024. 11. 8.(금) ~ 사업비 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보성군청 기후환경과 접수

나.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신청자 부담)

- 보내실 곳 : (우)59455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3층 기후환경과

### 5.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 (지원금액) 예산 및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6.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및 조건

#### 가.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 나. 우선지원 (사업비 내에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우선지원)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sub>x</sub>, NO<sub>x</sub>),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다.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라.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2)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 기준 및 지원사업장 선정

#### 가. 사업 참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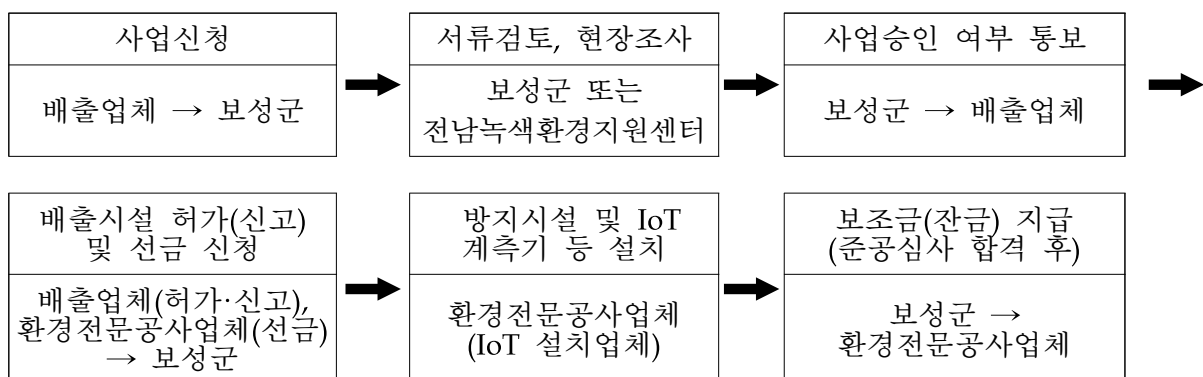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나. 지원 사업장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보성군에 제출
- 지원 사업장은 방지시설 견적서 등과 함께 보성군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성군(심사위원회)은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

### 3)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방지시설 등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 ①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붙임 4)를 보성군에 제출
- 신청서, 방지시설의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등 제출
    - 사업 참여 전에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은 진단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 첨부
- ②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③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 보완요청 통지받을 시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 제출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성군으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을 보성군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보성군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④ (허가 등 신청)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 ◇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제출

- ⑤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보성군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보성군에 제출하여야 함
- ⑥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
    -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등 밀폐조치를 하여야 함
    - \*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은 현장조사 및 검토 결과 설치가 곤란하거나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면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자가측정(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실시. 단,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 방지시설 전단 측정 면제
    - ※ 방지시설 가동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 공사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 ⑦ (준공심사)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변경허가(신고)증, 가동개시신고서, 자가측정기록부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 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 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보성군에 제출
- ⑧ (보조금 지급)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보조금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7.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1)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신규시설 중 4종, ③ 신규 시설 중 5종, ④ 기존 시설 순으로 우선지원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나.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를 포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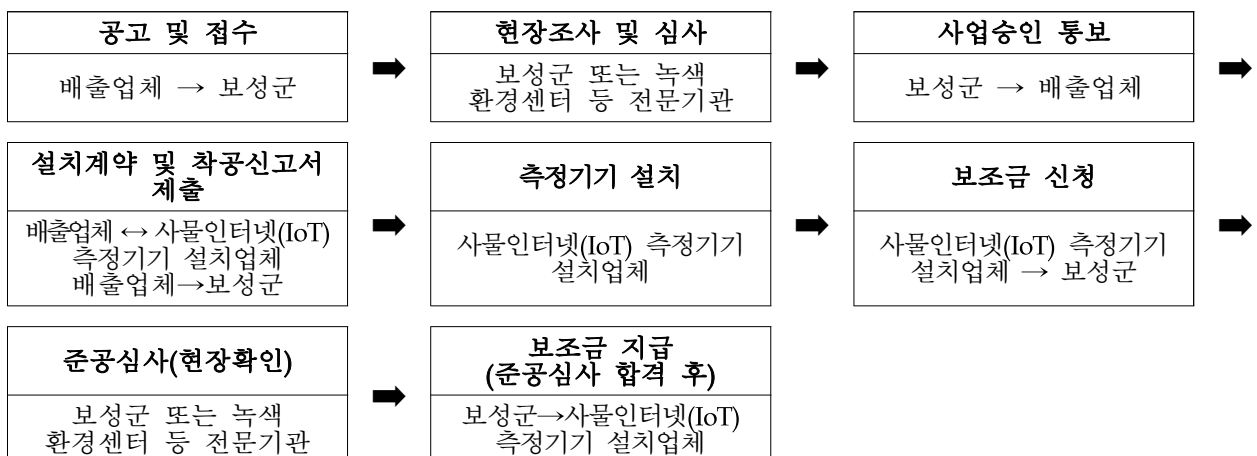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 <sup>1)</sup>	0 ~ 600A	0 ~ 500mmH <sub>2</sub> O	-40 ~ 100℃	0 ~ 14pH
오차 <sup>2)</sup>	±5% 이내			
동작온도	-20 ~ 60℃	-20 ~ 60℃	-20 ~ 60℃	0 ~ 80℃
형식	-	-	Pt 100Ω, 열전대 등	-
온도보상	-	-	-	0 ~ 50℃ <sup>3)</sup>
운용전원	-	DC24V(100 ~ 220VAC),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 <sup>4)</sup> ) 4 ~ 20mA (표시장치 <sup>5)</sup> )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 3)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4) 출력신호는 Gateway와 호환이 가능한 신호이면 mA 이외의 출력신호도 가능함
  - 5)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같음할 수 있음
-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 3)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①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붙임 6)를 보성군에 제출

○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②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현장조사\*)

○ 보성군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의 경우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현장조사 가능

③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

○ 보성군으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보성군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보성군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④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보성군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보성군에 제출하여야 함.

- ⑤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⑥ **(준공심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 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보성군에 제출
- ⑦ **(보조금 지급)**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8.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 1) 지원대상 및 조건

-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 및 노후 저녹스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나. (지원제외)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 다.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 2)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 사업장별 1대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노후 저녹스 버너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의 저녹스 버너 설치기준 10년 초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녹스 버너보다 대기오염물질 개선효율이 높은 시설을 지원(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및 현장 확인)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 ① 연료전환(B-C유→LNG) 사업장
  - ② 연료전환(경유→LNG) 사업장
  - ③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 ④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질소산화물 저감량 산정식>**

보일러 용량별 질소산화물 저감량(톤/년)=보일러용량(톤/hr)×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톤/년)  
**[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

구분	기존 일반버너	저녹스버너 교체	저감계수 (톤/년)
1	B-C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9678
2	B-C유 일반버너	경유 저녹스버너	0.8789
3	B-C유 일반버너	B-C유 저녹스버너	0.3224
4	경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3130
5	경유 일반버너	경유 저녹스버너	0.2234
6	LNG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1857

※ 1톤/hr 보일러, 부하율 64% 연간 3,600시간 가동 기준(1톤=619,000kcal로 산정)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 9.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병커-A, 병커-B, 병커-B), 저항악스유(LSWR),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 등으로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설

※ 저녹스 버너 교체의 경우 지원대상 시설은 「10.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에 따름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제2종) 등록업체\*의 가스공급(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시공, 보조금 지원 한도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나.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스템에 우선 지원

- 사업장당 1대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가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열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배출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질유 등을 사용하는 배출시설

다.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배출시설(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배출시설 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중앙·지방 행정기관 유사 사업(산단 내 클리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등) 파악

## 2) 시공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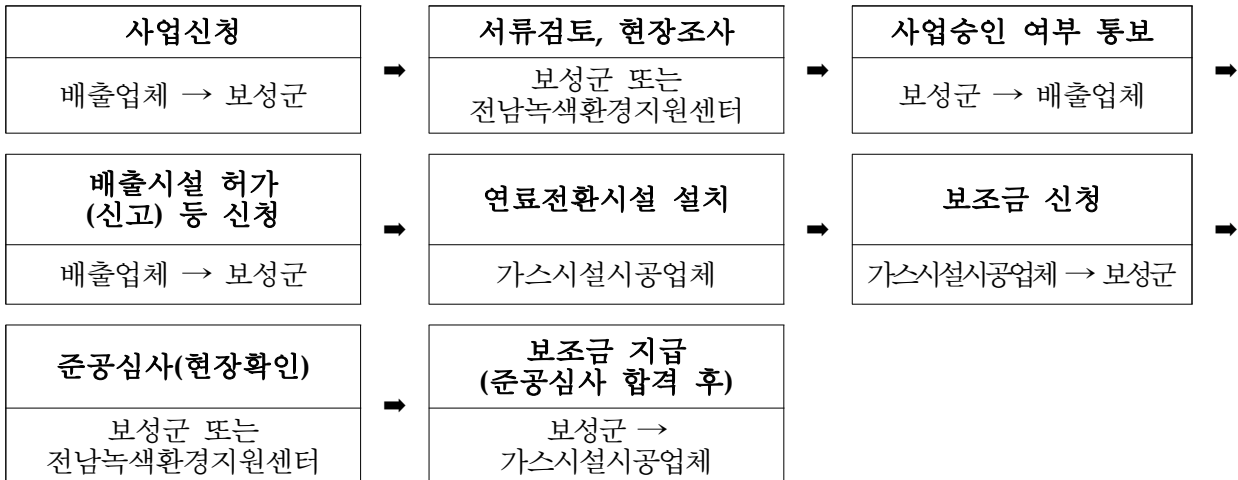
가. (시공업체 선정) 지원 사업장에서 가스시설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보성군에 제출

- 지원 사업장은 연료전환 시설 설계서 등과 함께 보성군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성군(심사위원회)는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

나. (시공가능 업체)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제2종)을 등록한 업체

- 사업장에 설치하려는 가스시설의 종류가 종별 등록된 업무내용에 적합하여야 함

## 3) 보조금 지급절차



①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연료전환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4-1 서식)를 보성군에 제출

- 연료전환시설 설치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자가측정 결과 등 제출

② (신청서 등 검토) 연소시설 노후도, 교체연료의 적합성,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환경민원 발생, 개선효과 등 종합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보완요청을 통지받을 시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③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 보성군으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가스시설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보성군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

우 보성군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4] (허가 등 신청)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배출업체는 연료전환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 ◇ 배출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연료전환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가스시설시공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 ◇ 가스시설시공업체가 연료전환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연료전환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가스시설시공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서류 등 제출

**5]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보성군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가스시설공사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보성군에 제출하여야 함

**6] (연료전환시설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연료전환시설 설치 완료**

- 배출시설 교체 완료 후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대상인 경우 배출시설 가동 전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7] (준공심사) 연료전환시설 적정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현장 확인**

**8] (보조금 지급)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연료전환시설을 가스시설시공업체가 보조금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10.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우선순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우선
- 사전 기술진단(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및 평가표(공고)에 따라 선정
  - 포기자 등 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추가 대상자 선정
  - \* 예산범위 내 지원

## 11. 보조금 회수

### 가. 보조금 회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연료전환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12.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지원금액 등이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예산보다 신청이 많을 경우, 사업장 여건, 설치효과, 사업장의 개선노력 및 지원 시급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함
- 기타 문의사항 : 보성군 기후환경과 ☎ 061-850-5346

### 《지원안내 및 서식》

- ▶ 신청서 서식은 보성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붙임 1】 방지시설 종류·시설 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보조금 지원한도

: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2.7억원, RTO 등 5.6억원, 공동방지시설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 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m <sup>3</sup> /분	3,300	2,970	1,650	1,320	
	200m <sup>3</sup> /분	4,700	4,230	2,350	1,880	
	300m <sup>3</sup> /분	6,300	5,670	3,150	2,520	
	400m <sup>3</sup> /분	7,500	6,750	3,750	3,000	
	500m <sup>3</sup> /분	8,000	7,200	4,000	3,200	
원심력집진시설	100m <sup>3</sup> /분	1,200	1,080	600	480	
	200m <sup>3</sup> /분	2,300	2,070	1,150	920	
	300m <sup>3</sup> /분	3,000	2,700	1,500	1,200	
	400m <sup>3</sup> /분	3,800	3,420	1,900	1,520	
	500m <sup>3</sup> /분	4,100	3,690	2,050	1,640	
흡수에 의한 시설	먼 지 용	100m <sup>3</sup> /분	3,500	3,150	1,750	1,400
		200m <sup>3</sup> /분	4,600	4,140	2,300	1,840
		300m <sup>3</sup> /분	6,100	5,490	3,050	2,440
		400m <sup>3</sup> /분	7,400	6,660	3,700	2,960
		500m <sup>3</sup> /분	8,400	7,560	4,200	3,360
	가 스 용	100m <sup>3</sup> /분	3,800	3,420	1,900	1,520
		200m <sup>3</sup> /분	5,000	4,500	2,500	2,000
		300m <sup>3</sup> /분	6,700	6,030	3,350	2,680
		400m <sup>3</sup> /분	7,900	7,110	3,950	3,160
		500m <sup>3</sup> /분	9,000	8,100	4,500	3,600
흡착에 의한 시설	100m <sup>3</sup> /분	1,600	1,440	800	640	
	200m <sup>3</sup> /분	2,900	2,610	1,450	1,160	
	300m <sup>3</sup> /분	3,500	3,150	1,750	1,400	
	400m <sup>3</sup> /분	4,400	3,960	2,200	1,760	
	500m <sup>3</sup> /분	5,000	4,500	2,500	2,000	
RTO (축열식소각로)	100m <sup>3</sup> /분	14,500	13,050	7,250	5,800	
	200m <sup>3</sup> /분	20,200	18,180	10,100	8,080	
	300m <sup>3</sup> /분	31,600	28,440	15,800	12,640	
	400m <sup>3</sup> /분	35,700	32,130	17,850	14,280	
	500m <sup>3</sup> /분	38,300	34,470	19,150	15,320	
RCO (축열촉매연소 장치)	100m <sup>3</sup> /분	21,600	19,440	10,800	8,640	
	200m <sup>3</sup> /분	31,700	28,530	15,850	12,680	
	300m <sup>3</sup> /분	48,000	43,200	24,000	19,200	
	400m <sup>3</sup> /분	55,200	49,680	27,600	22,080	
	500m <sup>3</sup> /분	61,800	55,620	30,900	24,720	
SCR (선택적 촉매 환원법)	100m <sup>3</sup> /분	24,300	21,870	12,150	9,720	
	200m <sup>3</sup> /분	28,600	25,740	14,300	11,440	
	300m <sup>3</sup> /분	33,200	29,880	16,600	13,280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400m³/분	37,200	33,480	18,600	14,880
	500m³/분	40,700	36,630	20,350	16,28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859천원	2,572천원	1,429천원	1,143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5,058천원	4,552천원	2,529천원	2,023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488천원	5,839천원	3,244천원	2,595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77천원	6,728천원	3,738천원	2,990천원
	1톤이상 2톤미만	7,535천원	6,781천원	3,767천원	3,014천원
	2톤이상 3톤미만	9,582천원	8,623천원	4,791천원	3,832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1,789천원	10,609천원	5,894천원	4,715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4,416천원	12,974천원	7,208천원	5,766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5,253천원	13,727천원	7,626천원	6,101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6,818천원	15,136천원	8,409천원	6,727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8,077천원	16,268천원	9,038천원	7,230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20,032천원	18,028천원	10,016천원	8,012천원
	10톤이상	21,658천원	19,492천원	10,829천원	8,663천원
전기집진시설	100m³/분	19,100	17,190	9,550	7,640
	200m³/분	28,300	25,470	14,150	11,320
	300m³/분	39,900	35,910	19,950	15,960
	400m³/분	49,500	44,550	24,750	19,800
	500m³/분	60,500	54,450	30,250	24,20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100m³/분	6,000	5,400	3,000	2,400
	200m³/분	8,900	8,010	4,450	3,560
	300m³/분	11,500	10,350	5,750	4,600
	400m³/분	14,100	12,690	7,050	5,640
	500m³/분	15,900	14,310	7,950	6,360
기타시설	100m³/분	2,697	2,427	1,349	1,079
	200m³/분	3,928	3,535	1,964	1,571
	300m³/분	4,787	4,308	2,394	1,915
	400m³/분	6,239	5,615	3,120	2,496
	500m³/분	7,568	6,811	3,784	3,027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총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kcal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kcal, 1usRT는 3,024 kcal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주6)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7)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의 경우 총진물을 포함 시설에 대하여 적용

## 【붙임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보조금 지원단가 등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 (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구분	장치의 기능	비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참조

### 【붙임 3】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시설별 보조금 지원액

< 공급연료 종류·시설 규격별 설치비 및 보조금액 >

(단위 : 천원)

종류	구분	시설규격	연료전환 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가스 전환 시설 공통	저녹스버너 부착 공사	[붙임 1]의 “방지시설 종류·시설 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에 따름				
LNG 연료 전환 시설	LNG배관설치 설치공사	10m	36,286	32,657	18,143	14,514
		20m	39,233	35,310	19,617	15,693
		30m	41,753	37,578	20,877	16,701
		40m	44,663	40,197	22,332	17,865
		50m	47,505	42,755	23,753	19,002
		60m	50,141	45,127	25,071	20,056
		70m	53,284	47,956	26,642	21,314
		80m	55,898	50,308	27,949	22,359
		90m	60,094	54,085	30,047	24,038
		100m	63,084	56,776	31,542	25,234
LPG 연료 전환 시설	LPG저장탱크 설비	0.25ton × 1기	10,167	9,150	5,084	4,066
		0.5ton × 1기	11,701	10,531	5,851	4,680
		1.0ton × 1기	14,770	13,293	7,385	5,908
		1.0ton × 2기	20,907	18,816	10,454	8,362
		2.0ton × 2기	33,180	29,862	16,590	13,272
		2.45ton × 2기	38,703	34,833	19,352	15,481
	기화 설비	50kg × 2기	27,760	24,984	13,880	11,104
		100kg × 2기	30,824	27,742	15,412	12,330
		150kg × 2기	35,064	31,558	17,532	14,026
		200kg × 2기	37,273	33,546	18,637	14,909
		300kg × 2기	48,318	43,486	24,159	19,327
		400kg × 2기	56,178	50,560	28,089	22,471
	LPG배관설치	10m	4,004	3,604	2,002	1,602
		20m	4,509	4,058	2,255	1,803
		30m	5,013	4,512	2,507	2,005
		40m	5,518	4,966	2,759	2,207
		50m	6,023	5,421	3,012	2,409
		60m	6,527	5,874	3,264	2,610
		70m	7,032	6,329	3,516	2,813
		80m	7,537	6,783	3,769	3,014
90m		8,041	7,237	4,021	3,216	
100m		8,546	7,691	4,273	3,418	

- 주1)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kcal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kcal, 1usRT는 3,024kcal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 주4) LNG배관 설치공사비는 도시가스 중앙배관에서 사업장으로 인입되는 공사비는 제외함
- 주5) 공급 연료에 따라 지원하는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에서 조정 가능



【붙임 4 - 구비서류 1】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업종/대기종수	
사업장 소재지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설치년도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 기존 방지시설 설치년도는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설치용량 변경 시 변경사유(풍량 재산정 등) 기재

2) 오염물질 개선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표시)

오염물질	b.자가측정 농도 (개선 전)	a.오염물질 발생농도 (이론산출)	c.개선 후 배출농도 (목표농도)	현 처리효율 $(a-b) \div a$	방지시설 개선효율 $[(a-c) \div a]$

※ 자가측정 농도(먼지 포함)는 최근 2회 측정 평균 농도 또는 최대치 택 1 작성.

(자가측정기록부, 오염물질 이론발생농도 산정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준공 후 자가측정기록부 자료 제출

3) 보증 사항(설치 후)

※ 오염물질 저감효율, 풍량 등 제시

4) 대상시설 사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①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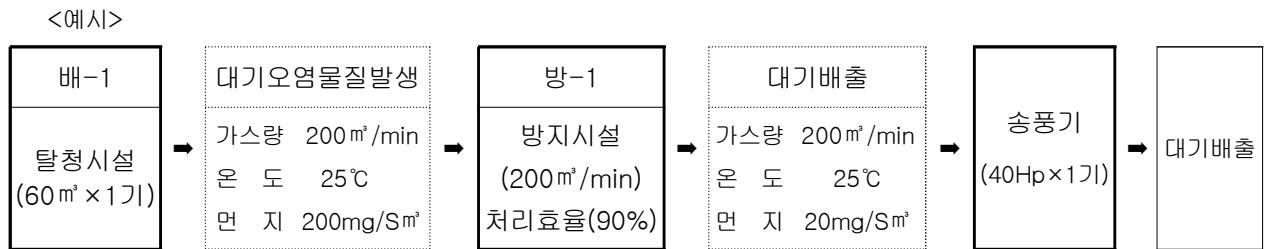
구분	배출시설명	용량 (단위기재)	관련사진
1	예시) 연마시설	15.8KW	“사진첨부”
2			
3			
4			
5			

②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	<사진>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노화 또는 부식, 처리효율의 감소 등)
-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하고 개선 전과 후로 나눠 표시)



다. 설계 사양

1) 배출시설별 배기풍량 및 오염물질발생량 산정

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참조한 문헌 등은 첨부로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 EPA 배출계수
- 실제 측정 자료
- 국소포집시설 설계 편람 등

②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 농도, 온도와 풍량을 계산하고,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의 혼합 가스에 대한 농도, 온도 및 풍량을 계산

2)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 방지시설 개요 (예시)

- 명칭 : 여과집진시설
- 형식 : Bag-Filter or Cartridge-Filter
- 필터규격 :
- 여과집진시설 탈진방식 :

나) 방지시설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① 통과속도 (여과속도) 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실무편람(1999. 07,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을 제시

② 필요 면적 또는 직경 : 통과(여과)속도에 따른 직경 또는 면적 계산

③ 내부 부품 설계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활성탄 적재방식 설명 : 활성탄은 요오드가 1,000이상 사용
- 활성탄(여과필터) 교체주기
- 충전층의 종류 및 높이, 사양
- 부대시설 설치사양 : 차압계, 레귤레이터, 로타리밸브 등
- 연료, 원료 등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작업시간 고려

다) 덕트의 설계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산업환기메뉴얼의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 제시

라) 압력손실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도면 또는 그림파일 세부내역 제출
- 배출시설 → 덕트 → 방지시설 최종 배출시 까지 압력손실 산출

마) 송풍기의 동력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동력의 여유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바) 세정수 순환펌프

- 액가스비, 유량과 수두(mH) 등 사양 명기
- 사양에 따른 동력 계산

라.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

- 1) 유지관리계획 : 후드 및 덕트, 방지시설, 송풍기 등

2) 유지관리비용 산정

가) 소모품 교체비(활성탄, 여과필터, 데미스터, 폴링 등)

※ 자체제작 소모품의 경우 설치 이후 안정적인 공급 방법 제시

나) 전력비

다) 기타 보수비

3. 공사 설계도면(설계도면은 A3 또는 A4 제출)

1) 방지시설 처리 흐름도(P&ID)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도,

3) 방지시설 외형도 (측정구 형태 및 위치가 포함)

4) 방지시설 내부도(물량 확인용),

5) 배관 및 덕트 설치도 (방지시설과 연계)

6) 방지시설 지지용 철구조물 및 유지보수용 사다리 및 계단 도면

6) 전기판넬 외형도 및 회로도,

7) IOT 외형도 및 회로도 등(사업장 내 설치위치, 치수, 부품위치 표시된 도면)

8) 기타 사항

- 물량산출 확인 가능하도록 치수 명기.

- 기타 특기 사항 및 특수 공법이 반영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도면 포함

- 공사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도면 제출

- 필요에 따라 기초, 보온 등 도면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천원 단위는 절사함) => 번호정리

※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방지시설별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필히 개별 작성

가. 공사비 총괄내역

총공사금액 (①+②+③)	방지시설①	방지시설②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예시] 방지시설①=방지시설A+사물인터넷A'

방지시설②=방지시설B+사물인터넷B'

1)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①)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① (A+A')	방지시설 (A-①)	사물인터넷(IoT) (A'-①)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A-①)

공사종별		금액(원)	세부산출내역
합계			
공사비	소계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다)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구분	공사종별	공사구분			비 고
		단가	수량	금액	
순공사원가	차압계 (압력계)	400,000			단위 : 원 (VAT제외)
	pH계 (흡수·세정시설)	1,000,000			
	전류계 (전기집진시설)	300,000			
	온도계	500,000			
	전배출류시계설	300,000			
	전방지류시계설	300,000			
	IoT계이트웨이	1,600,000			
	VPN	400,000			
	합계(A'-②)				

2)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②)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② (A+A')	방지시설 (A-②)	사물인터넷(IoT) (A'-②)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다) 사물인터넷(IoT)

※ 신청 방지시설 여러 개일 경우,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

나. 공사원가계산서

다. 공사비 집계표

라. 공사비 세부내역서

마. 자재수량 산출서

바.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사본

- 일위대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할 것 또는 당해연도 최근 종합적산정보 및 종합적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당 품목 밀줄)

사. 자재단가표

- 종합물가정보(또는 종합물자자료) 당해연도 1월호 이후의 단가적용하여 제출.예) 전동기, 활성탄  
- 물가정보 또는 물가자료에 단가가 없는 경우 구매업체 복수견적서 제출

아. 노무비 단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적용

※ 해당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 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원가계산서 상 외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경비 항목으로 구성
-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 5.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	신청서 총사업비(B)	자체 방지시설 투자(C)
천원단위 절사	4. 공사 소요금액 기재	A - B

※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시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 6.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신청)실적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내역

※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지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지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보성군수 귀하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보성군수 귀하

**【붙임 4 - 구비서류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신청(배출)업체		총 소요금액	
환경전문공사업체		(보조금)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처리공정 및 측정기기류 설치 계획(도면)
도면 삽입 또는 첨부

- 1) pH계 : 흡수탑 집수조 상단에 1기 설치
- 2) 온도계 : 흡수탑 배출덕트 측정구 하단에 1기 설치
- 3) 배출시설 전류계 : 배출시설 5기에 각 1기, 세정펌프에 1기 총 6기 설치  
\* 흡수시설·세정집진시설의 경우 세정펌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 포함
- 4) 방지시설 전류계 : 메인판넬 메인차단기에 1기 설치
- 5) IOT 게이트웨이 : 방지시설 MCC 측면에 설치
- 6) VPN : IOT 게이트웨이 포함

**2. 설치 사유**

- 배출시설 5기에 전류계를 각각 설치하여야 배출시설 가동 유무 확인 가능
- 세정펌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류계 1기 추가 설치
- 방지시설은 분전반 메인판넬 메인차단기 1기 설치로 가동 유무 확인 가능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사항(데이터 전송, 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발생시, 환경전문공사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 .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보성군수 귀하**

**【붙임 4 - 구비서류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4-1 - 구비서류 6】**

<b>저녹스버너 부착 신청서</b>			
<b>1. 사업장 현황</b>			
대 기 종 별		버너설치년도	년
설 비 종 류	<input type="checkbox"/> 보일러 <input type="checkbox"/> 냉온수기 <input type="checkbox"/> 건조기	보일러설치년도	년
사 용 연 료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m <sup>3</sup> /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m <sup>3</sup> ·hr)
전 열 면 적	(m <sup>2</sup> )	연소실 용적	(m <sup>3</sup> )
<b>2. 설치예정내역</b>			
제 작 사		모 델 명	
판 매 사		사 용 연 료	
설비종류(형식)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m <sup>3</sup> /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m <sup>3</sup> ·hr)
성능확인검사 대상여부	<input type="checkbox"/> 정격열부하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정격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시 연료소비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건조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b>3. 신청 금액</b>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b>4.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용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b>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2024년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 . . . .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인</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서명 또는 인)</div>			
<b>보성군수 귀하</b>			
※ 구비서류 1.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저녹스버너 설치 익년부터 7년간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사후관리 검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보성군수 귀하



**【붙임 4-1 - 구비서류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5】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신청서만 작성**

<b>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b>			
<b>1. 신청인(사업자)</b>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 -
업종		중소기업여부	
주소(소재지)	( )		
설치장소	( )		
<b>2. 사업장 현황</b>			
대기종별		버너설치년도	년
설비종류	<input type="checkbox"/> 보일러 <input type="checkbox"/> 냉온수기 <input type="checkbox"/> 건조기	보일러설치년도	년
사용연료		설비용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m <sup>3</sup> /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m <sup>3</sup> ·hr)
전열면적	(m <sup>2</sup> )	연소실용적	(m <sup>3</sup> )
<b>3. 설치예정내역</b>			
제작사		모델명	
판매사		사용연료	
설비종류(형식)		설비용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m <sup>3</sup> /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m <sup>3</sup> ·hr)
성능확인검사 대상여부	<input type="checkbox"/> 정격열부하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정격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시 연료소비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건조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b>4. 신청 금액</b>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b>5.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용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b>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20 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보성군수 귀하</b>			
※ 구비서류 1.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1부. 2.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양식 참조) 1부.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4. 보조금 반납 협약서(붙임7) 1부.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저녹스버너 설치 익년부터 7년간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사후관리 검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보성군수 귀하

**【붙임 5 - 구비서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6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신청(배출)업체	설치(시공)업체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관련시설	설치대상	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예시) 도금(30m <sup>3</sup> )*2, 탈사(15m <sup>3</sup> )*2, 흡수에의한시설(300 m <sup>3</sup> )*1	전류계(배출시설)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차압계				
	온도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합계				

※ 설치대상은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사항(데이터 전송, 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 00. 00

신청(배출)업체 : (인)

설치(시공)업체 : (인)

보성군수 귀하

##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상세히 기재

###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배출시설명과 용량, 시설간 이격거리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 기재

### 1) 방지시설-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pH계,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i>【예시】 방지시설명(용량)</i>	<i>흡수에의한시설(250) GATE WAY 설치 위치</i>	<i>pH계, 전류계 설치 위치 (메인 제어판넬 설치)</i>

<i>방지시설 pH계(순환조)</i>	<i>방지시설 전류계(순환펌프)</i>	<i>방지시설 전류계(송풍펌프)</i>

### 2) 배출시설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i>배출시설명(용량)</i>	<i>배출시설-탈지시설(용량)</i>	<i>탈지시설-2</i>

<i>화성처리시설</i>	<i>전류계 설치위치</i>	

※ 예시) 해당 방지시설(흡수에의한시설)에 경우는 배출시설 4기를 포함함.

해당 배출시설의 경우는 연속식 공정으로 컨베어벨트의 가동여부에 따라서 배출시설 4기의 가동여부가 확인이 가능함.

전류계의 경우 배출시설 각각의 설치가 불필요 하며 컨베어벨트의 가동여부 확인이 가능한 1기를 설치 하고자 함.

**【붙임 6 - 구비서류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7】

## 보조금 반납 약속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사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사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사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방지사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사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사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붙임 7-1】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받는 경우 작성**

## 보조금 반납 약속서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을 미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배출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연료전환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배출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배출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붙임 8】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 보조금 반납 약속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 >

측정기기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일[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부착한 경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GreenLink) 전송 확인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붙임 9】**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항목 및 배점				
사업장 여 건 (30점)	○ 사업장 및 주거지(10가구 이상) 이격거리				
	구 분	100m 이내	200m 이내	500m 이내	500m 초과
	배 점	10점	8점	6점	5점
	○ 교체 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최소 3년 이상)				
구 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배 점	10점	8점	6점	4점	
※ 설치년도 :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개시신고일 기준					
○ 공동방지시설 설치 시 참여 사업장 수					
구 분	5개소 이상	3개소 이상	2개소	단독설치	
배 점	10점	9점	8점	5점	
방지시설 설 치 기대효과 (30점)	○ 방지시설 설치 후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자가측정 결과)				
	구 분	기준 대비 50% 초과	기준 대비 30% 초과	기준 대비 10% 초과	기준 대비 10% 이하
	배 점	20점	16점	12점	10점
	○ 2023년도 소규모 방지사업 수요조사 등 참여 여부				
구 분	참여		미참여		
배 점	10점		0점		
사업장의 개선노력 (20점)	○ 5년 이내 사업장 자체 방지시설 설치 투자 실적(2018년 이후 투자)				
	구 분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0.5억원 이상	0.5억 미만
	배 점	20점	16점	12점	10점
	※ 신청서에 자체 사업비 투자 내역 첨부				
지 원 시급성 등 (20점)	○ 민원발생 및 배출기준 초과 등 사업선정 시급성 등(3년 이내)				
	구 분	민원 및 기준초과 3회 이상	민원 및 기준초과 2회 이상	민원 및 기준초과 1회 이상	민원 및 기준초과 없음
	배 점	20점	15점	10점	5점